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
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신설
 - 건설교통국 :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
- 한시기구 존속기한
 -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: 2007년 6월 30일까지
 - 공공기관이전지원단 : 2008년 10월 30일까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산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한시기구)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건설교통국)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 1 2 조 (건 설 교 통 국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공공기관 이관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6조 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~③ (생략)

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(생략)

제7조 (실·국·본부등 기구의 설치) ①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(생략)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